

9 규칙부 보고

제108회기 규칙부 사업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부 장 이승호
서 기 권희찬

1. 조직

1) 임 원

- 부 장: 이승호
- 회 계: 김경태
- 서 기: 권희찬
- 총 무: 임홍길

2) 실행위원

윤정희 류명렬 조영록 문금희 양성완 박태규 장활민 김홍선 류형욱 석경식 광현복 조현석 이현우 이윤찬

3) 부 원

정영기 박주완 조상용 윤병철 강 권 박권익 오윤택 김중열 광종오 정희승 민광배 김성수 이수호 김중철 김성구 김영발 임재호 정진규 이종우 김선중 김수환 김진수 김홍재 허효권 정동진 강종석 손병규 서상진 유홍중 김성경 권순익 최은준 김해환 장유진 광명현 김병근 양종수 김학규 이정태 김중선 서보천 김주엽 하원주 김중준 전승덕 손인식 김성고 김연태 김두근 백민기 진석재 이상봉 양정택 정병갑 전용호

2. 회의

1) 소위원회

(1) 제1차 소위원회

- ☞ 일 시: 2023. 9. 20.(수) 10:00
- ☞ 장 소: 새로남교회당
- ☞ 결의사항

- ① 총회 대외협력위원회 규정은 원안대로 받기로 하며, 총회규칙 제11조 2항에 8번으로 삽입하기로 하다.
- ②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의 상설위원회 청원 건은 총회규칙 제11조 2항에 9번으로 삽입하기로 하다.
- ③ 재개발특별위원회 내규 개정건은 규칙부로 이첩을 본회에 요청하기로 하다.

(2) 제2차 소위원회

- ☞ 일 시: 2023. 9. 21.(목) 09:50



☞ 장 소: 새로남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의 상설위원회 청원 건은 본회에서 재론하기로 가결하다.
- ② 헌의부 규칙개정 보고의 건은 개정을 받기로 가결하다.

(3) 제3차 소위원회

☞ 일 시: 2023. 9. 21.(목) 14:10

☞ 장 소: 새로남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이슬람대책위원회 개정의 건은 개정안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감사부 보고(감사규정)의 건은 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 ③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정관 개정의 건은 개정안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④ 정치부 수입사항의 건은 본회 결의된 대로 총회 임원회로 보내어 심의하기로 가결하다.
- ⑤ 총회 교육개발원 선거규정 개정의 건과 총회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건은 회기 중에 논의하기로 가결하다.

(4) 제4차 소위원회

☞ 일 시: 2023. 9. 21.(목) 15:25

☞ 장 소: 새로남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선거규정 19차 개정의 건은 2023년 9월 18일 19차 개정안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제5차 소위원회

☞ 일 시: 2023. 10. 31.(화) 11:3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회교육개발원 청원사항인 총회 규칙 개정의 건은 교육적인 부분에 헌신하실 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개정안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총회교육개발원이 청원한 총회선거규정개정안은 선관위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③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정관 개정의 건은 축조하여 심의하고, 일괄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④ 중요한 안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6) 제6차 소위원회

☞ 일 시: 2024. 7. 16.(화) 19:00

☞ 장 소: 비대면회의

☞ 결의사항

- ① 총회준비위원회 내규는 제4장 제8조 2항을 [총준위에 한함]을 [총회준비위원회에 한함]으로 수정하기로 하다.
- ② 총회준비위원회 내규 중 감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기에 감사규정에 대한 부분은 규칙부장과 서기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 ③ 총회정책연구소 정관에 이사회 인원 및 연구원 인원에 관하여는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에 수

정을 요청한 후 다시 심의하기로 하다.

- ④ 제2장(이사회) 제9조(임기 및 선거) [이사 임기는 2년으로 계속 연임할 수 있고, 임원의(동일직)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를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에 수정을 요청한 후 다시 심의하기로 하다.
- ⑤ 제16조(조직과 임무) [4. 행정간사: 1) 총회 직원의 자격을 갖고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2) 총회 본부에서 파견하며 본 연구소 소장의 지휘를 받는다.]를 일관성 있게 수정 보완(행정간사의 채용 방법을 명확히 하여 본부직원의 파송이 아닌 기구로써 직원채용 및 연봉, 정년, 복지 등 명확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요청하여 다시 심의하기로 하다.
- ⑥ 제3장(연구소)에 [소장,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을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임기에 대한 제한 및 정년, 월급체계 등 자세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기에 수정을 요청한 후 다시 심의하기로 하다.
- ⑦ 제3장 제17조 1항은 [소장 및 연구원에 관한 예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를 [소장 및 연구원과 행정간사에 대한 예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로 수정을 요청하기로 하다.
- ⑧ 제4장 제18조 [기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는 삭제하기로 한다.

2) 임원회

(1) 제1차 임원회

☞ 일 시: 2024. 1. 29.(월) 11:00

☞ 장 소: 대전남부교회당

☞ 결의사항

- ① AI 챗(chat GPT)를 통한 총회 행정 최적화 활용방안을 위한 실행위원회 및 자체 세미나를 하기로 하다.
가. 일시: 2024년 3월 7일(목) 11시
나. 장소: 총회회관
다. 강사: 마상욱 목사(총회 규정대로 강의료를 지급하기로 하다.)
- ② 총회세계선교회 정관 개정은 일괄 받기로 가결하다.
- ③ 규정집 제작건은 실행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가결하다.
- ④ 추경정원 건은 300만원으로 하기로 하다.

(2) 제2차 임원회

☞ 일 시: 2024. 6. 10.(월)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5차 규칙부 소위원회에서 결의한 총회교육개발원 청원사항의 건은 교육개발원의 발전을 위해서 결의하였으나 중간감사 지적사항으로 다시 검토한바 총회규칙(제4장 14조, 원안)대로 하기로 하다.
- ② 총회보고서 작성은 부장과 서기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3) 제3차 임원회

☞ 일 시: 2024. 8. 8.(목) 20: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회준비위원회 내규가 수정됨을 확인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총회정책연구소 정관 중 제9조(임기 및 선거) 1. 이사와 임원의(동일직)... 은 (동일직)을 삭제하여 받기로 하다.
- ③ 총회정책연구소 정관 중 제3장 16조 4항 및 17조는 수정한 대로 받기로 하다.
- ④ 총회정책연구소 정관 중 제4장 제18조(재정)은 “단, 후원금은 총회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입금하고 총회의 감사를 받는다.”를 추가하여 받기로 하다.

3) 실행위원회

(1) 제1차 실행위원회

☞ 일 시: 2023. 10. 31.(화) 13:3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규칙부 소위원회에서 결의한 아래의 3건은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총회교육개발원 총회 규칙 개정의 건은 개정안(제2장 14조)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교육개발원 총회 선거규정 개정안은 선관위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다.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정관 개정의 건은 일괄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특별한 중요한 사안이 아닌 행정상 절차의 건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 ③ 총회 개회 후 화요일 저녁회무까지 각 부서는 규칙(정관)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청원하다.

(2) 제2차 실행위원회

☞ 일 시: 2024. 3. 7.(목)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챗GPT를 총회 빅데이터와 연계하여 총회 산하 헌법 및 총회 규칙(규정, 정관)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기로 규칙 챗을 제작하기로 가결하다. 교단의 헌법과 규칙에 대한 질문에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AI챗봇 개발을 목표로 한다. 챗봇의 주 사용자가 될 교단 목회자들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
- ② 예산청원: 기존에 추경 청원한 300만원과 챗(chat GPT)예산 400만원, 총 700만원을 청원하기로 가결하다.

3. 수입 및 처리사항 결과보고

1) 총회교육개발원 이사장 선거 관련 총회규칙 개정 청원의 건

- 총회규칙(제4장 14조, 원안)대로 하기로 하다.

2) 총회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의 정관 개정안

- 개정안(제108회 총회보고서 794p)대로 받기로 하다.

3) 총회준비위원회 내규 심의안

- 별첨 2대로 받기로 하다.

청 원 서

수신: 총회장
 참조: 서기 및 재정부장
 제목: 규칙부 청원의 건

아래와 같이 규칙부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회의비 예산 증액 청원

각 기관의 정관과 규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칙부 임원회 및 소위원회 중심으로 결정하지 않고 실행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결의하려면 108회기 규칙부 예산인 400만원으로는 부족 하오니 회의비 예산을 종전대로 700만원으로 환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규칙 개정 건

총회 산하 기관의 정관 및 운영규정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규칙부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본회 현장에서 급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부의 사업기간동안 심 의 및 연구하여 기관의 정관 및 상비부/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총 회규칙개정을 청원합니다.

개정안	비고
제30조 총회부서(기관, 상비부, 위원회)의 정관 및 운영규정 등을 개정, 신설, 심의가 필요한 경우 총회 전 6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규칙부에 심의를 요청하고 규칙부는 심의 후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신설

3. 정관 및 내규 심의안 현의의 건

1) 총회정책연구소 정관 심의안

- 아래 심의안대로 정관(안)을 별첨1대로 받기로 하다.

정관(안)	심의안	비고
제2장 제9조 1항 이사와 임원의(동일직) 임기는 3년으로 1회 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2장 제9조 1항 이사와 임원의(동일직) 임기는 3년으로 1회 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삭제
제4장 제18조(재정) 본 연구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총회 전입금과 이사 및 자문위원의 분담금, 기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4장 제18조(재정) 본 연구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총회 전입금과 이사 및 자문위원의 분담금, 기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단, 후원금은 총회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입금하고 총회의 감사를 받는다.”를 추가하여 받기로 하다.	추가

2024년 9월

규 칙 부
 부 장 이 승 호
 서 기 권 희 찬



*별첨1

총회정책연구소 정관(안)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연구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이라 한다.
- 제2조(소속) 본 연구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의 산하기관으로서 총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 제3조(위치) 본 연구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본부(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30) 내에 둔다.
- 제4조(목적) 본 연구소는 총회의 미래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여 총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전문성을 갖춘 연구원을 통한 정책 연구 및 수립
 2. 정책 공유를 위한 홍보 및 세미나 활동
 3. 정책 자료집 및 도서 발행
 4.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이사회 조직 운영
 5. 정책 아이디어 수집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활동
 6. 기타 정책연구를 위한 활동
- 제6조(구성)
1. 본 연구소는 이사회와 연구소로 구성한다.
 2. 이사회: 연구소 운영을 행정과 재정으로 후원하며 지도한다.
 3. 연구소: 총회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여 총회에 제공한다.

제2장 이사회

- 제7조(이사의 자격)
1. 총회 총대 목사, 장로로서 본 연구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여야 한다.
 2. 이사는 본 연구소 운영을 위해 재정을 후원하며,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8조(이사회 임원 및 직무)
1. 이사장(1인): 목사로서 연구소와 이사회를 대표한다.
 2. 부이사장(2인): 목사와 장로 각 1인으로 이사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3. 서기(1인): 목사로서 회의 기록 유지 및 관련 서류를 책임진다.
 4. 부서기(1인): 목사로서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5. 회계(1인): 장로로서 연구소 재정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6. 부회계(1인): 장로로서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7. 감사(2인): 목사 또는 장로로서 연구소 재정을 감사한다.
- 제9조(임기 및 선거)
1. 이사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 또는 임원 중 궐위된 경우나 임기 만료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3. 이사장의 선임은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며, 나머지 임원과 이사는 이사회 총회에서 선임한다.
4. 이사의 임기는 총회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면 만료된 것으로 보며, 임기 중 해임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10조(이사의 의무)

1. 이사회에 출석해야 하며, 본 연구소의 주요 업무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2. 연구소 운영을 위한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이사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1조(회의 및 절차)

1. 회의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8월에는 정기총회로 모인다.
3.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12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승인
2. 예산 및 결산, 재정에 관한 승인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이사, 자문위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제13조(이사회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모든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단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2. 본 정관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일반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원과 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사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의 의사 정족수는 재적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의결 제척 및 결의 위임)

1. 임원과 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이거나 금전 수수에 관련된 당사자의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결의를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내용은 특정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

1. 총회 감사부의 감사를 받는다.
2. 본 연구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받는다.
3. 이사회는 총회 감사부에 요청하여 감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소

제16조(조직 및 임무)

1. 소장: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①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이며, 계속 연임할 수 있다.
 - ② 본 총회에 소속하고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한다.



- 2. 상임연구원: 관련 정책분야를 연구한다.
 - ①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이며, 계속 연임할 수 있다.
 - ② 본 총회에 소속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여야 한다.
- 3. 비상임연구원: 관련 정책분야를 연구한다.
 - ①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이며, 계속 연임할 수 있다.
 - ② 본 총회에 소속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여야 한다.
- 4. 행정간사: 연구소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 ① 행정간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본 연구소 소장의 지휘를 받는다.
 - ② 행정간사에 관한 예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7조(운영)

- 1. 소장 및 연구원과 행정간사에 관한 예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재 정

제18조(재정) 본 연구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총회 전입금과 이사 및 자문위원의 분담금, 기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단, 후원금은 총회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입금하고 총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19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1일부터 익년 8월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회계감사)

- 1. 본 연구소의 회계에 관해서는 매년 총회 감사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 2. 본 연구소의 모든 회계 관련 기록은 이사회가 요청하거나 총회가 요청한 경우는 열람에 응해야 한다.

제21조(예산과 결산)

- 1. 본 연구소의 수입,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이를 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2. 본 연구소의 결산은 매년 8월 (이사회)정기총회에 보고하고 (교단)총회에도 이를 보고한다.

제5장 정관 개정과 내규

제22조(정관의 개정)

- 1. 정관 개정은 이사회 회원 2/3 이상의 출석에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2. 결의된 개정안은 본 교단 총회에 상정하여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 결의로 확정된다.

제23조(내규의 제정 및 개정)

- 1. 본 연구소의 운영을 위한 내규는 이사회에서 제정 및 개정을 결정한다.
- 2. 내규의 개정, 발의 및 개정안 작성은 각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지명한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할 수도 있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교단 총회 결의와 동시에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 운영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를 따른다.

*별첨 2

총회준비위원회 내규(안)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준비위원회 (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차기 총회장의 정책을 연구 입안하여 각 권역별로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향후 일관성 있고 고른 추진과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지위) 본 위원회는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위원회) 제3항에 의거한 특별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본 위원회 사업은 교단 내 활동으로 제한한다. 필요시 타 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4조(조직)

1. 위원: 익년 총회 정임원과 선임자(15명, 각 지역구도별 목사 3인, 장로 2인)로 한다.
 - 가. 선임: 부총회장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되 해당 구도별 적임자를 선임한다.
 - 나. 임기: 본 위원회 구성 시(목장기도회 이후)부터 익년 총회개회 전까지로 한다.
2. 임원: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 가. 위 원 장 1인
 - 나. 부위원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 다. 총 무 1인
 - 라. 서 기 1인
 - 마. 회 계 1인
3. 자문위원: 본 위원회는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전문위원: 본 위원회는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분과위원회: 본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조직·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임원 임무)

1. 위원장: 본 위원회의 회무 일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을 협조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3. 총무: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진행한다.
4. 서기: 회의 소집, 안전상정, 회의기록 업무를 담당한다.
5. 회계: 본 위원회 재정운영 사항을 관장한다.

제6조(위원회 임무) 본 위원회는 차기 총회장의 정책입안과 비전제시 및 수행을 위해 총회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산하 기관과 연합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마련한다.

제3장 운 영

제7조(회의소집)



1.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 시, 또는 위원의 1/3 이상이 요청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8조(재정) 본 위원회는 다음 예산으로 운영한다.

1. 총회예산
2. 기부금(총회준비위원회 한함)

제9조(회계연도)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익년 총회 전까지로 한다.

제10조(감사) 회계는 총회가 정한 규정 및 일반 회계 관례에 따라 총회의 감사를 받는다.

부 칙

1. 제정 및 시행: 본 위원회의 내규는 제100회 총회에서 '총회준비위원회 신설의견'이 통과되어 제 101회 총회 때부터 가동된 위원회 운영에 대해 제106회 총회준비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총회준비위원회 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한다.
2. 효력: 본 위원회의 내규는 규칙부 심의 이후부터 즉시 시행한다.
3. 개정
 - 가. 본 위원회의 내규는 위원회 1/3 이상의 발의와 출석 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개정하여 규칙부 심의를 받는다.
 - 나.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과 규칙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2024년 7월 1일 제정